

#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19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혁신기술인 기후테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녹색산업육성 지원',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사업을 통폐합하여 탄소중립 신기술과 아이디어 개발 관련 창업·중소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창업지원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를 민간에 신규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 나.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라. 민간위탁 필요성

-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마. 위탁사무 내용

-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기업발굴·창업 활성화,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평가 지원)
-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투자유치·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판로개척·수출지원)
- 기후테크 정보 분석·제공(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실태조사, 동향 및 정책 정보제공, 기술·제품 등 대시민 홍보)

바. 위탁기간 : 3년 ('25. 1. 1. ~ '27. 12. 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아. 소요예산 : 868백만원(민간위탁금, '25년 기준)

#### 자. 기대효과

- 기후테크 강소기업 육성 및 탄소중립 기술·제품개발 촉진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4.4.16.)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녹색산업육성 지원’,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종료 후 신규 민간위탁 추진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오동훈(☎2133-3586)